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(고민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49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25.

발 의 자 : 고민정 · 이정문 · 조계원
박성준 · 강경숙 · 손 솔
이성윤 · 김문수 · 모경중
전종덕 · 김 윤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자금대출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군복무자,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자립지원 대상자 등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보호자 부재, 가정 내 갈등·학대 등 사유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보호가 종료된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면서도, 동일한 사유로 청소년복지시설에서 거주하다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자 면제 규정이 없어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에 대해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해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의2제2항제5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1353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2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자 면제에 관한 적용례) 제16조의2제2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법률 제21353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2(이자의 면제) ① (생략)</p> <p>② 채무자가 대출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소득금액(이하 “연간소득금액”이라 한다)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6. (생략)</p> <p>③·④ (생략)</p>	<p>법률 제21353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2(이자의 면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5의2. 「<u>청소년복지 지원법</u>」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자립 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<u>고시하는 사람</u></p> <p>6. (생략)</p> <p>③·④ (생략)</p>